

## 부분개정

##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3

제출일자 : 2004.06.10.

제출자 : 광진구청장

## 1. 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3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 함 (안 제16조의2)

- 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안 별표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생략(내부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3일
6월이상 ~ 1년미만	6일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 3년미만	12일
3년이상 ~ 4년미만	14일
4년이상 ~ 5년미만	17일
5년이상 ~ 6년미만	20일
6년이상 ~	21일

<별표3>중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설&gt;</u></p>	<p>제3조의2(비밀업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li> <li>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li> <li>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li> <li>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 《신구조물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p> <p>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토요일휴무제</p>																																				
<p>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 6월미만</td><td>4일</td></tr> <tr><td>6월이상 ~ 1년미만</td><td>7일</td></tr> <tr><td>1년이상 ~ 2년미만</td><td>10일</td></tr> <tr><td>2년이상 ~ 3년미만</td><td>13일</td></tr> <tr><td>3년이상 ~ 4년미만</td><td>16일</td></tr> <tr><td>4년이상 ~ 5년미만</td><td>19일</td></tr> <tr><td>5년이상 ~ 6년미만</td><td>22일</td></tr> <tr><td>6년이상 ~</td><td>23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4일	6월이상 ~ 1년미만	7일	1년이상 ~ 2년미만	10일	2년이상 ~ 3년미만	13일	3년이상 ~ 4년미만	16일	4년이상 ~ 5년미만	19일	5년이상 ~ 6년미만	22일	6년이상 ~	23일	<p>제18조(연가일수) ①</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 6월미만</td><td>3일</td></tr> <tr><td>6월이상 ~ 1년미만</td><td>6일</td></tr> <tr><td>1년이상 ~ 2년미만</td><td>9일</td></tr> <tr><td>2년이상 ~ 3년미만</td><td>12일</td></tr> <tr><td>3년이상 ~ 4년미만</td><td>14일</td></tr> <tr><td>4년이상 ~ 5년미만</td><td>17일</td></tr> <tr><td>5년이상 ~ 6년미만</td><td>20일</td></tr> <tr><td>6년이상 ~</td><td>21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3일	6월이상 ~ 1년미만	6일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 3년미만	12일	3년이상 ~ 4년미만	14일	4년이상 ~ 5년미만	17일	5년이상 ~ 6년미만	20일	6년이상 ~	21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4일																																				
6월이상 ~ 1년미만	7일																																				
1년이상 ~ 2년미만	10일																																				
2년이상 ~ 3년미만	13일																																				
3년이상 ~ 4년미만	16일																																				
4년이상 ~ 5년미만	19일																																				
5년이상 ~ 6년미만	22일																																				
6년이상 ~	23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3일																																				
6월이상 ~ 1년미만	6일																																				
1년이상 ~ 2년미만	9일																																				
2년이상 ~ 3년미만	12일																																				
3년이상 ~ 4년미만	14일																																				
4년이상 ~ 5년미만	17일																																				
5년이상 ~ 6년미만	20일																																				
6년이상 ~	21일																																				
<p>&lt;별표3&gt;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 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th><th style="text-align: center;">일수</th></tr> </thead> <tbody> <tr><td>출산</td><td>배우자</td><td>1</td></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p>&lt;별표3&gt;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 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th><th style="text-align: center;">일수</th></tr> </thead> <tbody> <tr><td>출산</td><td>배우자</td><td>3</td></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3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3																																			
<p>부 칙</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